

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. 4. 22 선고 2019가단7161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판결 선고 2020. 4. 22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여수시 C 대지 142.5m²지상 파이프구조 천막지붕 단층 창고 49.8m²를 철거하고 위 대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(무변론 판결)

판사 서봉조

별지